8. 제출서류

구분	구비서류
공통 서류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환자용, 의료기관용) - 본인확인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증빙서류*(하단 참고)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 치료비 영수증 계산서(병원용)
응급 행정	- 입원(응급·행정)확인서
발병 초기	-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 진단 연도 명시)
의료 기관	(의료기관 신청시) -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최초1회) - 의료기관 통장 사본(최초 1회)

* 소득증빙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의료급여증, 수급권자 증명서 등
차상위계층	차상위 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등
건강보험 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응급·행정입원 대상자의 의료보장 형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QnA

Q 응급, 행정입원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가능한가요?

A 네. 응급, 행정입원은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상자에 따라 지원항목의 차이가 있으므로 관내 보건소·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외래치료지원 대상자는 정신건강의학과에 외래진료를 받는 일반 대상자도 치료비 지원대상자인가요?

A 아닙니다. 외래치료지원 대상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거해서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은 대상자입니다.

Q 응급·행정입원을 하였는데, 코로나검사도 받았습니다. 코로나 검사비도 지원이 되나요?

A 네. 입원을 위하여 진행한 검사이므로 치료비 지원이 됩니다.

Q 발병 초기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료비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발병초기 지원은 20년 1월부터 21년 12월까지 발생한 치료비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지급 불가합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마음 건강을 위하여
정신질환자 치료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2021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정신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한 국민을 위하여
국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으며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 소득기준

지원내용	소득기준	
응급·행정	국민기초 생활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소득무관
발병초기 외래치료 지원	차상위계층 모두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중위소득 80%이하

2. 지원금액: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유형 모두 포함한 지원 상한액)

3. 신청기간: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4. 지원종류

구분	내용
응급입원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 동안 입원을 하는 경우
행정입원	지자체장이 진단 및 치료를 지정 정신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입원하는 경우
발병초기 정신질환	최초 진단*을 받은 후 5년 이내 치료를 받는 경우
외래치료 지원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

※ 발병초기 정신질환
- 최초 진단을 받은 후 5년 이내 환자
- 해당진단: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20-F29), 조병 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장애(F34)

※ 외래치료 지원(법64조)
입원중이거나 치료를 중단한 자 중에서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

5.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일부부담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 본인일부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장기지속형 주사제 포함), 마취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신종감염병 검사비(코로나) 지원

6. 신청방법

- **진료**
  - 입원결정(응급·행정)
  - 외래 진료(발병초기, 외래치료 지원)
- **서류준비**
  - 환자, 보호의무자 및 기관직원*이 신청서 작성(*의료기관, 보건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 신청 구비서류 준비
- **신청**
  - 환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신청
- **신청결과 회신**
  -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대상자 지원 여부 통보
- **치료**
  - 의료기관에서 입원 및 외래진료
- **귀가**
  - 퇴원 및 귀가 시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귀가
- **치료비 지급**
  - 환자의 치료비를 관할 보건소가 의료기관에게 지급

* 치료비 지원 대상자가 기납부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청 가능

7.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환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